

環太平洋經濟統合機構의 設立과 韓國經濟

김영구*이재승**

〈 목 차 〉

- I. 序 論
- II. 環太平洋經濟機構 統合化의 動向
- III. 環太平洋經濟機構 統合에 따른 우리 經濟의 利點과 問題點
- IV. 環太平洋經濟機構 統合과 우리의 對應方案
- V. 結 論

I. 序 論

오늘날 太平洋地域은 世界經濟 量的·質的 擴大에 따른 動的 變化속에서 大西洋經濟權은 증가하는 巨大한 經濟權으로 浮上함과 더불어 沿岸國들 간의 相互依存關係가 政治·經濟 및 社會 全分野에 걸쳐 날로 深化되고 있다.

이처럼 太平洋地域은 급속한 經濟成長과 豊富한 天然資源 및 高度의 産業技術을 背景으로 無限한 成長可能性과 潛在力을 具備하고 있는 巨大하고 ダイナミック한 經濟權을 形成하고 있으나, 地域적 광대성, 人種적·문화적 다양화 이질성, 경제발전과 산업 및 기술수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共同協力體의 結束이 상당히 制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非協力的인 經濟政策으로 인하여 域内外의 經濟交流에서 相互間에 값비싼 댓가를 지불케 하고 經濟的 諸般問題와 緊張을 造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國際協力體制 地域主義的 共同協力體制 形成되어가는 時代的 狀況에 비추어 볼 때, 太平洋地域에서도 域内の 化合된 經濟發展을 위하여 共同協力體制를 擴大·強化함으로써 新國際經濟秩序의 복잡한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時代的 要請에 의해, 太平洋頂上會談의 제의는 위대한 太平洋時代의 開幕을 위한 시기적

* 海洋大學校 社會大 法學科 副教授, 法學博士(國際法)

** 水産大學校 社會大 經營學科, 經營學博士(國際經營科)

절한 提案임과 동시에, 이제까지 提示된 太平洋經濟統合안보다도 包括적인 內容을 담고 있기 때문에 域內 各國으로부터 非常한 關心과 상당히 肯定的인 呼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第5共和國 出帆 이후 域內 主要國들과 가진 頂上會談을 통하여 그 可能性을 충분히 打診한 우리 政府의 慎重한 檢討結果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의 實現可能性은 매우 높은 것이라 하겠다.

또한 太平洋地域權의 共同協力體制의 結束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政府次元下에서 찾을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한 公式적인 提案이라는 점에서 그 意義가 실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趣旨에 立脚하여 본 學術論文에서는 이제까지 域內에서 提示된 太平洋經濟統合의 構想內容과 이에 대한 域內各國의 同鄉을 比較·檢討하여 앞으로 構成될 太平洋地域統合體의 性格과 機能을 예측함으로써, 太平洋經濟統合體가 結成될 경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經濟的 利點과 우리에게 內在된 問題點을 檢討함과 동시에 太平洋地域統合에 따른 우리의 對應方案을 提示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II. 環太平洋經濟機構 統合化의 動向

1. 環太平洋經濟統合機構의 構想內容

太平洋經濟統合을 實現시키려는 움직임은¹⁾ 60年代 初부터 대두하여 65년에 日本 一橋大學 小島清 教授가 太平洋自由貿易地域(PAFTA)안을 처음 發表하였고,²⁾ 이를 契機로 域內先進國間에 다양하게 論議되어 오던중, 79年 美議會 亞·太小위에서 太平洋貿易開發機構(OPTAD)안을 祭器하였고,³⁾ 80년에는 前 오히라 日本수상의⁴⁾ 諮問機關인 環太平洋連帶研究그룹이 環太平洋連帶安을 發表하였다. 그리고 이번 우리 政府에 의해 太平洋頂上會談이 提議된 것이다.

고지마 教授의 PAFTA안은 域內 先進5 開國(美國, 日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간에 關稅를 完全철폐하여 이들 5開國을 自由貿易地域으로 結成하려는 것으로서, 이의 效率적인 推進을 위하여 政府間 初步的 通商機構로서 貿易, 投資, 원조위원회로 構成된 太平洋貿易援助開發機構(OPTA

- 1) 69年代初 當時 日本의 미끼(三木)外相과 호주의 Hasluck 外相이 太平洋經濟統合에 대해 公式적인 關心을 보이기 시작 하여, 이를 계기로 太平洋經濟統合의 움직임이 서서히 대두하기 시작하였다(外換銀月報 90年 10月, p.9)
- 2) 고지마教授는 太平洋自由貿易地域(PAFTA, Pacific Free Trade Area)안을 日本經濟研究센터가 '開發途上國의 貿易과 開發'을 主題로 하여 開催한 國際會議에서 처음 발표하였고, 68年 1월에 同研究센터가 '太平洋地域의 貿易과 開發'을 主題로 한 第1次 太平洋貿易開發會議(PTDC,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Conference)에서 確定 發表하였다.
- 3) 太平洋貿易開發機構(OPTAD, The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안을 美議會 亞·太小委의 委員長인 John Glenn의 要請에 의해 美國의 예일대학교 H.Patrick와 호주의 국립대학교 P.Drysdale 교수와 共同研究한 論文 "An Asian-Pacific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를 土臺로 한 것이다. (月刊貿易 90年 10月號, p.28).
- 4) 前오히라 日本수상은 79年初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를 순방하면서 太平洋經濟統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한바 있으며, 또 그는 80年 9월에 가진 호주의 프레이저 수상과의 頂上會談에서 太平洋協力會議(PCC, Pacific Cooperation Committee) 설립문제를 논의하였고, 美國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 80年 9月15日 호주 캔버리에서 國際세미나형식으로 第1次 총회를 인도네시아, 第四次 總회를 84년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外換銀月報, 90年10月號, pp.4-21).

D)5)를 設置하되, 域內 開途國들은 옵서브자격으로 참가시키려 하고 있다. 이 안이 國內外的 지지를 받지 못하여 비록 實效를 거두지 못했으나 域內共同協力體制의 結束을 위한 최초의 提案이라는 점에서 그 意義가 실로 크다 하겠다.

美議會의 OPTAD안은 經濟開發協力機構(OECD)6)와 비슷한 政府主導形機構로서의 性格과 機能을 갖고서 貿易自由化, 貿易과 產業의 救助改編, 地域開發金融, 海外直接投資, 自願과 에너지의 共同開發, 大共產圈貿易 등과 같이 主要政策別로 具體的인 實現 方案을 처리케 하려는 것이며, 그리고 參加國은 域內 先進5開國, 아세안 5開國, 韓國, 홍콩, 대만, 파푸아.뉴기니아 등 市長經濟體制를 갖고 있는 14開國으로 出發하여 域內的 社會主義를7) 포함한 汎地域의 協力機構로 점차 擴大한다는 것이다.

日本의 環太平洋連帶案은 域內的 相互利害와 協力體制의 結束, 域內經濟問題의 共同協議, 人的, 技術的 協力強化, 域內貿易協助와 擴大 및 産業救助改編, 金融流通構造의 改善, 域內資源의 共同開發과 研究, 交通.通信體制의 擴充 등과 같이 域內的 自由開放의인 相互紐帶와 協力を 強化하고 經濟 및 社會文化 交流도 擴大하므로써 域內的 化合된 經濟發展을 達成하려는 包括的인 內容을 담고 있으며, 이를 土臺로 日本은 第13次 太平洋經濟委員會(PBEC)8)에서 太平洋經濟共同體(PEC)9) 안을 祭器한 바 있다.

이번 太平洋頂上會談의 提議內容은 첫째, 太平洋時代의 開幕을 위한 共同協力體制의 結束을 效率的으로 推進할 수 있는 太平洋頂上會談의 制度化, 둘째, 同 會談에는 域內國 전체를 包括的으로 포함시키려는 域內的 門戶開放, 셋째, 特定國의 主導權과 政治, 經濟的 블록화를 止揚하고 域內的 互惠.平等을 圖謀하려는 域內國의 主權과 獨立認定, 넷째, 域內的 貿易增大, 經濟.技術協力的 強化, 人力開發의 촉진, 交通.通信體制의 擴充, 教育.文化交流의 擴大 등을 통하여 域內的 經濟發展을 圖謀하려는 域內 共同協力體制의 強化, 다섯째, 域內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協力強化 및 開途國 相互間의 協力增大를 통한 域內的 經濟的 南北問題의 解決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우리 政府의 提議는 상기의 統合安보다 그 範圍가 廣範圍하고 包括的인 內容을 담고 있다 하겠다.

2. 域內各國의 動向

5) 太平洋貿易援助開發機構(OPTAD, The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id and Development)案은 고지마 교수와 P.Drysdale 교수가 68년에 共同提案한 것이다(月刊貿易, 90年 9月號, pp.28-31).

6) 金元卿, 秋憲, 國際經營學總論, p.78. 朴壽伊, 國際貿易論, p.644.

7) 太平洋貿易開發會議(PTDC)에서 소련(第6次, 멕시코시티), 중공(第10次, 켄버리)이 各各 참여한 바 있으며, 또 90年 5月 日本에서 열렸던 "日本과 亞細亞, 太平洋國間的 經濟協力"이라는 國際심포지움에서 中共이 초청된 바 있다.

8) 太平洋經濟委員會(PBFC, Pacific Basic Economic Council)은 太平洋圈 先進5開國(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으로 구성된 400여개의 민간기업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域內開發國들은 옵서브자격으로 參與하고 있다. 특히 會는 域內的 經濟協力과 開發問題, 經濟的 南北問題 등 域內的 경제문제를 폭넓게 협의하고 있는 회의로서 67年 8월에 제 1 차 太平洋經濟會가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는 太平洋貿易開發會議(PTDC)와 함께 域內的 2대민간기구중의 하나이다.

9) 태평양경제공동체(PEC, Economic Community)案의 主要內容은 1. 人的交流의 進 과 인 2. 交通.통신의 정비 강화, 3. 통화.금융체제의 정비촉진, 4. 역내 관광개발의 공동협력, 5. 자원개발의 촉진, 6. 자유개방경제체제의 유지 등이 있다.

太平洋經濟統合에 대한 域內 各國의 立場을 살펴 보면, 먼저 美國은 協力強化를 발판으로 域內 國들의 紛爭防止, 對蘇膨脹勢力的 견제, 軍備節減의 效果 및 沈滯된 經濟力의 回復 등을 위하여 太平洋經濟統合의 필요성을 意識하고 있으나 이를 公式的으로 推進할 경우 政治體制의 블록화 를¹⁰⁾ 助長한다는 蘇聯의 非難과 自由無差別原則을 追求하는 經濟政策上 어긋난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提示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의 경우는 經濟政策的으로 地域主義(Regionalism)을 推進해 오면서 太平洋沿岸國들은 輸出對象地域과 資源輸入地域化하였거, 또 經濟大國이나 政治小國이라는 對外的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太平洋經濟統合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EC-ASEAN 會談,¹¹⁾ EC-ACP 間¹²⁾의 로메 協定이 締結되었을 뿐 아니라 美國과 EC의 保護主義가 점차 強化되자¹³⁾ 이에 對應하기 위하여 域內的 統合이 結成되기를 더욱 바라고 있으며 또 강력히 推進해 오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過去 英聯邦國으로서 大西洋經濟權에 차지하는 政治·經濟的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英國經濟의 沈滯化¹⁴⁾로 英聯邦國들과의 經濟交流가 減少되고 있는데 비해 域內的 經濟交流가 점차 增加함에 따라 域內共同協力體制의 結束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¹⁵⁾는 60年代부터 太平洋經濟統合에 깊은 關心을 가져오고 있다.

ASEAN은 自體의 協力體制의 結束과 EC와의 頂上會談 및 域內國과의 個別的 協力擴大¹⁶⁾를 통하여 太平洋經濟統合의 必要成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太平洋經濟統合이 結成될 경우 域內 各國으로부터 輸出市場化와 資源供給地 등과 같은 對外經濟政策의 目標地로 귀착될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環太平洋連帶案에 대해서는 過去 大東亞共榮圈의 再版化를 우려하여 巨富反應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우리의 頂上會談提議에 대해서는 상당히 肯定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域內 新興工業國에서는 無關稅主義와 自由開放經濟體制를 追求하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물론이 고,¹⁷⁾ 國際孤立化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대만과 對外經濟政策을 追求하고 있는 域內唯一의 後

- 10) 2차대전 후 美國은 수련의 팽창세력을 견제하고자 對유럽 復興援助(마셜,프렌)의 受用機關으로서 歐洲經濟協力機構(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를 結成하여 약 200억弗에 달하는 경제원조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유럽지역의 공동협력체제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EEC등과 같은 경제통합체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였다.
- 11) (1)GATT規定에 따른 최혜국후대의 상호공여, (2) 무역확대와 통상협력의 강화, (3) 투자촉진과 기술이전의 협력, (4) EC의 ASEAN에 대한 각종 개발사업의 촉진, (5) 상호간의 경제협력의 설치(국제경제연구원, 연구총서 제16호 지역경제통합의 추세와 전망, ASEAN역내의 경제협력의 현단계와 전망, 국제경제연구원, 연구총서 제15호 전후 국제경제30년역일③경제협력)
- 12) 로메협정은 75년 2월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EC 9開國과 A.C.P(아프리카, 카리브해 연안국, 태평양일부국가) 46開國간에 맺은 經濟協力協定이다. 79년 10월에 5年間의 1次協定期間이 끝나고 第2次 協定이 조인되어 A.C.P가 맹국이 48開國으로 늘어났다.
- 13) 美國은 현재 日本 및 域內 新興工業國과 雙貿易인 輸出規制協定을 맺고 있고, 多者間纖維協定(MFA)에 따라 韓國, 臺灣등 纖維류 輸出國들에게 保護障壁을 높이고 있다. 그의 輸入規制措置로서 輸出自律規制, 輸入禁止, 相對關稅, 輸入쿼터, 任意的 輸入許可 및 雙務쿼터制 등을 實施하고 있다.
- 14) 李찬九, 國際金融論, 에코노미아 '92년, pp229-233.
- 15) 호주 프레이저수상은 호주 상공회의소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원과 에너지에 관한연구"라는 주제로 개최한 회의에서 太平洋經濟權의 共同協力體制를 化하기 위하여 太平洋이 실현되어야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 16) 1977년 5월에 개최된 第3次 ASEAN- 호주회의는 ASEAN-호주무역협정 및 食品加工프로젝트건설 등에 합의했으며, 대뉴질랜드회의에서는 ①畜産, ②貿易增大, ③山林開發, ④木材加工 등에서의 협력증대에 합의하였다(국제경제연구원, 특수분석시리즈 제 71호, ASEAN 역내의 經濟協力的 계단계와 전망.

發國인 파푸아·뉴기니아도 우리와 함께 經濟統合을 必要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은 域內 先進國에서 推進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한편 中南美地域은 現在 CACM,¹⁸⁾ LAFTA¹⁹⁾가 結成되어 있고, 85년에는 이를 라틴아메리카 共同市場(LACM)²⁰⁾으로 統合하려는 計劃하에 있으며, 이로 인해 太平洋經濟統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反應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參與할 경우 太平洋經濟統合體는 汎世界的인 協力機構가 될 것이며 또 우리의 海外進出에 있어 새로운 전략적 要衝地가 될 것이다.

3. 太平洋經濟統合의 方向

이상으로 太平洋經濟統合案과 域內各國의 動向을 살펴 보았다. 과연 太平洋地域의 特殊性에 비추어 볼 때 太平洋經濟統合體가 어떠한 形態와 機能을 갖고서 形成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中南美地域을 제외한 太平洋沿岸國들은 域內經濟統合에 대해 상당히 肯定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또 域內의 特殊한 여건으로 인하여 具體的이고 公式的인 統合案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러한 域內國들의 基本立場을 충분히 타진한 우리 政府가 이번 太平洋頂上會談을 提議하게 된 것이며 이로 인해 域內의 經濟統合을 위한 契機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太平洋經濟統合이 結成될 경우 그 形態는 앞에서 살펴 본 統合안을 重點적으로 比較해 볼 때, 유럽 共同體(EC)²¹⁾와 같은 典型的인 經濟統合體보다는 經濟開發協力機構(OECD)와 비슷한 性格을 갖고서 域內의 經濟協力を 共同으로 推進할 機構가 될 可能性이 높다 하겠다.

그리고 이번 頂上會談의 內容이 科學 統合案보다 광범위하고 包括的일뿐 아니라 政治的 次元에서 共同協力體制의 結束을 積極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앞으로 成立될 太平洋經濟統合體는 OECD와 비슷한 性格과 機能을 갖되, 이번에 우리 政府가 提議한 頂上會談內容을 土臺로하여 무역, 資源, 觀光, 人力과 技術, 通貨와 金融, 交通과 通信등과 같은 分野에 重點을 두고서 出帆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겠다.

III. 環太平洋經濟機構 統合에 따른 우리 經濟의 利點과 問題點

17) 싱가포르와 홍콩은 輸入品에 대해 무관세원칙을 실시하고 있다. 단 알콜, 담배, 석유제품 등에 대해서는 재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제경제연구원, 특별보고 제23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현황과 구조.)

18,19,20) 中南美共同市場(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지역(LAFTA, Latin American Common Market)에 대해서는 다음 參考文獻을 참조(국제경제연구원, 연구총서, 제 16호, 지역경제통합의 추세와 전망, 국제경제연구원, 연구총서, 제 15호, 국제경제30년사-③경제협력편, 朴壽伊, 前개書, pp.645-647, 金元卿·秋 憲, 前개書, pp.100-111, pp.472-473.

21) 國際經濟研究員, 研究叢書, 第15號, 戰後 국제경제30年史-③경제협력편, 研究叢書, 第16號, 지역경제통합의 趨勢와 展望, 金元卿·秋 憲, 前개書, pp.129-p.131, pp.469-471.

1. 國際經濟上的 利點

東北亞에 位置한 우리나라는 EC나 ASEAN 등과 같이 經濟的으로 共同協力體制를 함께 할 隣接國이 具備되지 못한 地理的 環境으로 인하여 國際經濟協力問題에 있어 점차 孤立化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共同協力體制의 結束을 통하여 國際發言權과 交渉力을 強化시키지 못한 우리의 個別的 經濟政策은 세계 各國의 差別的 제한적인 經濟措置로 인하여 國際經濟上的 不利益을 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太平洋經濟統合을 實現함으로써 域內國들과의 共同協力體制를 擴大, 強化해 갈 때 國際經濟上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이익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첫째, 東北亞에 位置한 우리의 地理的 한계성을 타파하여 國際經濟上的 孤立化를 방지케 할 것이며, 共同協力體制를 통한 經濟政策上的 國際 發言權과 交渉力을 強化하므로써 우리의 經濟的 協力權을 보다 現實的이고 실질적으로 擴大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理念과 體制를 불문하고 門戶를 開放하고 있는 우리의 經濟政策은 太平洋協力體制의 結束을 통하여 大共産圈과의 經濟的 協力 모색이 可能하며, 第3 世界의 非同盟國들과의 經濟的 協力は 물론이고 政治的 次元下의 交渉力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아직은 우리의 海外進出이 미흡한 실정에 있는 中南美地域이 參與할 경우 무한한 潛在的 輸出, 資源, 投資 및 建設市場力을 形成하고 있는 中南美國들과의 協力擴大를 통하여 새로운 海外市場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네째, 域內國 相互間의 共同協議와 協助에 의하여 域內에 澎湃하고 있는 不確實性과 不安定性을 除去함으로써 域內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經濟적 諸般問題를 조성, 完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太平洋地域에는 政治的 協力機構가 없는 關係로 인하여 域內의 平和共存을 위해서는 經濟統合에 의한 共同協力體制를 強化시킴으로써 蘇聯의 太平洋 膨脹勢力을 牽制할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安保體制의 구축과 國內外 經濟上的 安定을 確保할 수가 있음은 물론이고 大北우위의 外交力을 보다 強化할 수가 있을 것이다.²²⁾ 이상에서 論議된 바와 같이, 太平洋經濟統合을 통하여 우리가 國際經濟上 確保할 수 있는 이점은 經濟的 利益 뿐만이 아니라 政治的 차원하의 利益과도 直結되는 것이라 하겠다.

2. 經濟 各部門別 利點

우리 經濟는 총무역액의 70%, 原油를 除外한 기초원자재 收入額의 97.8%, 직접투자유치의 74.5%, 産業技術導入의 75%, 交通, 通信活動의 80%를 太平洋地域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太平洋經濟統合을 통한 共同協力體制의 강화는 우리의 經濟 各分野에 상당한 利益을 가져올 것으로

22) 大西洋經濟圈은 經濟的으로 EC., 政治的으로 NATO가 結成되어 있는데 비해 太平洋經濟圈은 經濟的으로나 政治的으로 공동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太平洋經濟統合體가 結成될 경우 太平洋地域의 經濟協力은 물론이고 정치, 군사적인 협력기구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이다.

기대된다.

貿易 : 經濟統合의 初期段階에는 關稅와 같은 각종 保護障壁²³⁾이 漸進的으로 撤廢될 것이며 또한 各국의 産業 및 技術水準에 따라 적게는 品目別로 크게는 産業別로 合意的인 分業制가 실시될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對外指向的인 經濟政策을 追求하는 우리에게 있어, 輸出商品의 海外市場 浸透을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輸出市場의 大量確保를 가능케 하므로써 우리의 域內 貿易量을 대폭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며, 또 關稅引下, 또는 撤廢에 의한 外貨流出을 減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域內的 合意的인 分業制는 우리의 國際優位産業을 重點的으로 育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輸出産業의 國際競爭力을 強化시킴으로써 先進國과의 自由競爭을 可能케 할 것이다. 한편 勞動의 自由移動을 圖謀할 경우에는 우리의 풍부한 人力資源을 大量으로 輸出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資源 : 域內에는 天然資源²⁴⁾이 대량으로 賦存되어 있으므로, 이의 共同協力體制가 強化될 것이므로 域內的 資源開發과 研究에 있어 先進國과 함께 共同參與가 可能하며, 域內에는 資源生産國과 消費國이 함께 있어 資源의 價格과 供給面에서 安定策이 마련될 것이므로 價格安定에 의한 外貨流出의 減少와 資源收入에 있어 長期的인 安定供給이 可能할 것으로 期待된다. 또 海洋資源開發에 있어 共同協力이 強化될 경우 技術水準이 미약한 우리로서는 獨自的인 開發이 어려운 우리의 大陸棚開發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부족한 國內資源을 大量 確保할 수가 있을 것이다.

通貨.金融 : 域內國들의 自主的 換率政策을 統一시킴으로써 通貨의 安定²⁵⁾이 維持될 것이며, 通貨의 安定은 域內貿易依存도가 높은 우리에게 價格 변화에 따른 피해를 防止케 하고 國內通貨의 安定으로 物價 상승을 抑制하고 인플레이션을 防止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金融體制의 既存的 流通構造를 改善하여 對外資金需要의 安定供給을 도모할 경우 長期的인 資金供給이 安定的으로 維持될 것이다. 또 域內資本의 自由移動²⁶⁾을 擴大.講話하여 海外直接投資를 增大시킬 경우에는 우리의 海外投資留置가 보다 쉬울 것이며, 특히 民間資本의 蓄積을 적극 支援할 경우 資本蓄積이 빈약한 國內企業으로 하여금 安定的인 內的基盤을 構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人力.技術 : 域內 各國은 産業 및 技術水準에 있어 상당한 隔差를 나타내므로²⁷⁾ 域內的 均衡있는 經濟發展을 위하여 人力과 技術協力이 擴大.強化될 것이다. 즉 域內 開途國의 産業發展을 위하여 中間技術의 移轉이 강력히 推進될 것이며 經營管理과 産業技術의 發展을 위하여 高級人力을 共同育成하고 技術開發을 적극 協力할 것이므로, 重化學工業에 필요한 中間技術의 導入은 물론이고

23) 日本은 섬유류, 혁제품 등에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1次商品에 대해선 임의수입허가제, 수입쿼터제, 수출자율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호주는 수입쿼터제(자동차, 모직물, 제지품), 총량쿼터제(문방구용, 면도칼, 철판, 절연체), 관세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뉴질랜드는 개별 수입면장제, 수입금지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국내원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의 1次商品輸出에 대해 輸出稅를 부과하고 있다.(국제경제연구원, 특별보고 제23호,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현황과 구조).

24) 域內 광물자원의 生産量은, 석유 25.1%, 천연가스 46.8%, 석탄 31%, 철광석 26.3% 동광석 55%, 보오 크사이드 34.1%, 연69.3%, 아연광 41%, 니켈 58.9%, 주석 60%를 점유하고 있다.(국제경제연구원, 특별보고 제23호,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경제현황과 구조).

25,26) 李纘九, 전개서, pp.103-109, pp.313-325.

27) 국제경제연구원, 특별보고 제23호,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현황과 구조.

先進國의 高度化된 産業技術의 導入이 가능하며 高級人力을 大量 肉聲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人力과 技術協力強化는 防衛産業의 發展을 이룩할 수 있으며 人力과 技術水準이 微弱한 國內中小企業의 育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展望된다.

交通.通信 : 먼저 交通分野는 向後 域內貿易量의 增大를 고려할 때에 內陸交通分野보다는 海洋交通體制의 協力이 보다 강화될 것이며, 90年代에 들어서는 航空分野의 交通體制가 主流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船舶의 運賃引下 安定, 內陸交通手段과 船舶 및 航空技術의 協力이 強化될 것이므로 交通分野의 技術向上은 물론이고 航空技術의 協力이 強化될 경우 民間航空技術과 航空防衛産業의 發展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通信分野의 協力強化는 海外企業의 進出과 民間交流가 擴大되고 있는 우리에게 電話, 電報 및 텔렉스體制의 再整備와 技術向上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獨自의 開發에 어려운 海底케이블의 更新과 人工衛星의 共同發射 등을 모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交通.通信體制의 再整備와 擴充을 위한 域內國間의 共同協力強化는 우리에게 상당한 利益을 가져올 것으로 提示된다.

觀光.建設 : 太平洋地域은 開發이 可能한 潛在的 觀光資源을 豊富하게 內在하고 있으므로 域內觀光開發을 위한 共同協力이 推進될 것이므로, 우리는 제주도과 같은 특정 地域을 國際觀光地로 開發시켜 域內外의 觀光客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므로써 觀光輸入增大와 人的交流의 확대를 통한 相互利害增進을 도모하고, 觀光收入중 일부분을 再投資하여 國內觀光開發을 더욱 擴大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建設分野는 中東建設의 成功的인 背景을 토대로 하여 아직 進出이 미미한 域內의 各種開發事業에 우리의 積極的인 參與가 擴大될 것이며 특히 ASEAN이나 中南美地域을 第2, 第3의 中東市場化하여 대량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3. 太平洋經濟統合에 따른 問題點

오늘날 우리 經濟는 賦存資源의 有限성과 人口의 大幅的인 增加 및 資源 消費的 産業의 發展함에 따라 資源收入이 增大되고 있으며, 資本과 技術 蓄積의 貧弱성과 國內市場의 狹小로 인하여 內需基盤이 沈滯되고 企業體質이 상당히 弱화되어 있다. 또 이로 인한 外貨獲得의 必要性은 輸出過大經濟政策을 야기시켰고, 輸出過大政策을 國內物價와 勞動賃金의 上昇 및 國內 인플레이션을 誘發시키므로써 우리의 經濟力을 더욱 弱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太平洋經濟統合이 自由開放的인 經濟體制下에서 域內의 共同協力を 推進할 경우에는²⁸⁾ 技術水準이 微弱한 우리는 先進國과의 自由競爭에 놓일 것이므로 새로운 先進技術을 導入하여 商品의 質을 改善하지 않는이상 激化될 輸出競爭에서 先進國에 뒤질 우려가 있으며, 또 域內의 關稅引下 또는 撤廢로 海外商品이 國內에 過大流入되어 國內市場에서 國內外商品의 販賣競爭의 激化될 경우, 國內商品의 質을 改善하고 國民의 意識構造를 改善하지 않는다면 國內에서도 外國商品과의 自由競爭에서 밀려날 것이다. 또한 이는 外國商品의 國內收入需要를 大幅的으로 增加시키므로써

28) 本論文II, 太平洋經濟統合의 動向 참조.

外貨流出의 增大 및 國際收支上의 不均衡을 더욱 惡化시킬 憂慮가 있는 것이다.

太平洋經濟統合을 통하여 域內資本의 自由移動이 실시될 경우 先進國의 大資本이 國內에 過大誘入됨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資本蓄積이 微弱한 國內企業의 沈滯化와 先進大企業의 國內市場 獨占化 現狀이 나타날 것이다. 海外資源 및 觀光開發과 같은 域內的 각종 開發事業에 있어서 우리의 技術水準과 建設企業의 體質을 強化시키지 못한다면, 비록 域內 각국이 域內的 開發事業을 共同으로 推進할지라도 高度의 産業技術을 구비한 先進國의 獨占化 現상이 나타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의 開發分野는 극히 制限的으로 縮小될 뿐만 아니라 限定된 技術 범위내에서만 局限될 것이다.

IV. 環太平洋經濟機構 統合과 우리의 對應方案

1. 國內經濟政策的 對應方案

다가오는 太平洋時代의 개막에 積極적이고 能動的인 자세로 對處하기 위해서는 經濟 全分野에 걸쳐 既存의 經濟政策을 大勢的인 眼目에서 再調整하여 우리의 弱화된 經濟力을 培養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國內景氣政策을 伸縮性있게 調整하므로써 沈滯된 國內經濟의 內需基盤을 安定的으로 구축해야 한다. 현재 汎國民의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物價와 賃金上昇의 抑制政策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며, 國內市場의 流通構造를 改善하고 狹小한 國家市場規模를 大規模화로 擴大·改編하여 景氣의 活性化를 回復시켜야 한다. 또 對外指向의인 輸出過大政策을 大內指向의인 內需基盤 強化政策으로 調整·緩和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國內全業의 內室化를 위하여 약화된 專業體質을 根本的으로 改善해야 한다. 利潤의 過大追求로 인하여 喪失되어 버린 企業家精神을 企業人들 스스로 回復시켜야 하며, 民間資本의 蓄積을 적극 圖謀하여 전業의 財務構造를 改善해야 한다. 또 輸出過大政策으로 빚어진 國內專業의 덤핑 輸出을 防止하고 國內企業間의 海外市場에서의 輸出競爭이 防止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規模의 政策化를 위하여 既存의 産業構造를 改編시켜야 한다. 값싼 勞動力을 基礎로 한 輕工業을 海外企業專業으로 轉換시키고, 국내 大企業은 勞動集約的인 産業을 資本集約的인 事業으로 變化시킴으로써 生産力을 擴大시키고 國際競爭力을 大幅 弱화시켜야 한다. 특히 國際競爭力이 나약한 産業은 과감히 淘汰시켜 버리고 國際競爭力이 강한 産業을 重點 育成시켜야 한다.

네째, 國際競爭力 弱화를 위하여 産業技術發展의 脆弱性을 改善해야 한다. 既存의 産業技術의 問題點은 中間技術의 以前을 통하여 整備·補完하고, 새로운 先進技術을 導入하므로써 生産性의 效率을 擴大시키고 輸出商品의 質을 高級化시킴은 물론이고, 既存技術을 바탕으로

한 品質改善과 生産性的 效率增大에도 적극 努力해야 한다. 그리고 重化學工業의 技術改善을 물론이고 특히 海外進出의 展望이 밝은 建設企業의 각종 支援施設과 高度의 技術을 요하는 開發裝備을 大幅의인 擴大·改善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의 풍부한 人力資源을 積極的으로 開發·育成시켜야 한다. 技術水準과 國內資源의 脆弱性を 豊富한 人力資源으로 對處시키기 위해서는 人力開發을 위한 支援策이 마련되어야 하며, 海外研修를 통한 우수한 高級人力을 적극 育成시키되 先進國에 편중치 말고 ASEAN과의 協力·擴大를 위하여 ASEAN에 大幅的으로 派遣시켜야 한다.²⁹⁾ 그리고 國內育成이 가능한 人力資源은 全 産業分野에 걸쳐 均衡있게 育成시키되, 특히 소홀하기 쉬운 低賃金 勞動者의 質을 海外建設 勞務者를 中心으로 重點 改善시켜야 한다.

2. 對外經濟政策的 對應方案

太平洋經濟統合이 EC와 같은 定型的인 統合形態를 지양하고 OECD와 비슷한 性格을 갖고서 域內國 相互間의 共同協力體制의 結束을 指向할 것으로 展望되므로 우리의 對外經濟政策을 域內國들의 經濟的 特性에 따라 區分하여 伸縮性있게 效率的으로 推進해야 할 것이다.

域內 先進國과는 開發途上國에 위치한 우리 經濟를 高度화된 産業技術을 具備한 先進經濟로 成長 할 수 있는 方向으로 協力體制을 擴大·講話시켜야 한다.

첫째, 美·日의 경우는 우리의 貿易依存성과 赤字를 考慮할 때 貿易構造의 再編成을 위한 對策이 마련되어야 하며, 現行 이들이 취하고 있는 각종 保護障壁을 漸進的으로 撤廢하도록 相互協力を 講話해야 한다.³⁰⁾ 그리고 이들이 所有하고 있는 高度의 産業技術과 大資本을 導入하여 우리의 技術과 資本蓄積을 위한 對策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과 함께 域內開發의 共同進出方案을 물론이고 이들을 통하여 對共產圈進出方案도 동시에 圖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호주·뉴질랜드·캐나다의 경우는 현지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의 安定的인 確保와 天然資源 및 海洋開發을 위한 共同協力方案을 摸索하고, 이들의 각종 保護障壁을 撤廢케 해야 할 것이며, 또 文化의 人的交流의 擴大를 통하여 相互의 利害를 一致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ASEAN 諸國들은 大外指向的인 현지 經濟開發事業에 우리의 參與를 要請하고 있으므로 · 이에 積極的으로 參與하고, 특히 우리는 資源開發事業에 중점을 두고서 共同協력을 弱화시키되 基礎原子材의 安定的인 確保를 위해 積極 協力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進出可能性이 높은 ASEAN의 潛在的 輸出市場을 第2의 中東市場化하여 商品輸出은 물론이고 建設·投資 金融企業의 積極的인 進出方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相互間의 通商問題를 協議·造成하고 漁業 및 海洋開發의 共同協력을 擴大實施해야 한다.

넷째, 현지 防衛産業의 育成을 위하여 技術協력을 擴大하고 그들이 要請하고 있는 새마을 運動의 전수를 통하여 상호의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29) 日本은 현재 ASEAN과의 協力弱화를 위하여, 해외연수생 또는 經濟專門家 파견의 약 70%을 ASEAN을 대상으로 하여 대폭적으로 파견시키고 있다.

30) 주13,17,23참고.

域內的 新興工業國들과는 向後 域內的 貿易增大를 고려할 때 相互間的 輸出競爭이 보다 激化될 것이므로 相互間的 輸出競爭을 補完·緩和하고 先進市場의 開拓問題와 低開發國의 進出에 있어 共同參與에 관한 相互의 協力을 強化해야 한다. 그리고 資本과 技術蓄積이 先進大企業보다 약한 相互間的 企業을 合作하여 形式등에 先進大企業과의 競爭力 強化도 圖謀해야 할 것이며, 先進國으로부터 中間기술의 이전문제에 있어서도 공동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中南美地域³¹⁾은 우리의 海外進出이 매우 未洽한 實定에 있으므로 人力과 技術交流를 촉진시키고 民間全業을 통하여 經濟協力を 漸次的으로 弱화시키야 함을 물론이고 安定的 資源에서도 協力を 擴大하여 相互의 利害를 一致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經濟化합과 함께 同地域이 形成하고 있는 거대한 輸出, 資源, 投資市場을 第 3의 中東市場化하여 우리의 海外進出을 대폭적으로 擴大시켜야 한다.

V. 結 論

위대한 太平洋時代의 開幕과 함께 太平洋經濟權의 中樞의 機能을 擔當할 太平洋經濟和合이 指向하는 窮極의인 目的이 太平洋 沿岸國들의 共同協力體制의 結束을 擴大·強化하므로써 太平洋地域의 持續의이고 安定的인 經濟發展을 圖謀하여 太平洋沿岸國들의 經濟的 利益을 極大化시키려는 것임이 分명한 바, 太平洋經濟統合을 통하여 우리의 經濟的 利益을 極大化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政策의 次元에서 對內外經濟政策을 伸縮性있게 效率的으로 修行하므로써 內的으로는 國內經濟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하고 外的으로는 域內國들과의 共同協力體制를 擴大·強化하여 太平洋時代의 開幕에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姿勢로 代替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太平洋時代의 開幕에 있어 先驅者의 位置에 서서, 域內的 共同協力體制의 結束을 위한 最善의 方案을 講求해야 할 것이며, 域內的 和合된 經濟發展을 위하여 最大의 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裴勇元, 信用狀去來에 있어서의 書類點檢義務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6.
2. 韓柱燮, 信用狀論, 東星社, 1984.
3. Day D.M.,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Butterworths, 1981.
4. Finkelstein Herman N., Legal Aspects of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0.
5. Guests A.G., Benjamin's Sale of Goods, Sweet & Maxwell Ltd, 1981.

31) 金元卿·秋憲·전개서, pp100-111

6. Gutteridge H.C. & Megrah M.,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Europa Publication Ltd, 1979.
7. Harfield Henry, *Bank Credits and Acceptances*, The Ronald Press, 1974.
8. Kozolchik Boris,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in the Americas*, Matthew Bender Co., 1976.
9. Lowe R., *Commercial Law*. Sweet & Maxwell, 1983.
10. Lusk H.F., *Business Law Principles and Cases*, Irwin, 1978.
11. Matti Kurkela, *Letters of Credit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Oceana Publications, 1985.
12. Oppenheim P.K., *International Banking*, ABA, 1978.
13. Reeday T.G., *The Law Relating to Banking*, Butterworths, 1980.
14. Sassoon D.M., *CIF and FOB Contracts*, Stevens & Sons, 1975.
15. Schmitthoff C.M., *Mercantile Law*, Stevens & Sons, 1984.
16. _____, *Commercial Law in a Changing Economic Climate*, Sweet & Maxwell, 1981.
17. _____, *Export Trade*, Stevens & Sons, 1981.
18. Ventris F.M., *Banker's Documentary Credits*, Lloyd's of London Press, 1983.
19. _____, *First supplement to Banker's Documentary Credits*, Lloyd's of London Press, 1985.
20. Ellinger E.P., *Standby Letter of Credit*, *International Business Law*, 1978.
21. _____, *Fraud in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 *Journal of Business Law*, 1981.
22. Harfield Henry, *The Emerging Law of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Bank Guarantees*, *Ariz.L.Rev.*, 1982.
23. Kozolchik B., *The Legal Nature of the Irrevocable Commercial Letter of Credit*,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1